

2003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77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1. 2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1. 30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2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

-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

3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은 조성목표액 500백만원과 조성이후 사용계획 수립
- 기금사용은 기금조기 증식을 위하여 사용억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33조(기금의 설치), 지방재정법 제110조(기금운용) 및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원의 금액을 조성목표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왔으며,
- 2003. 1월말 현재 기금조성에상액이 495,065천원으로 기금증식을 위하여 당분간 사용을 억제하고 목표액 달성이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,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므로 설치근거 및 목적과 사용용도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기금조성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2. 12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